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상임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(법률 제20410호, 2024. 3. 26. 공포)으로 무인 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·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·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고,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, 장애인·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, 그리고 과태료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구체화 (안 제34조의5, 별표 3의2)

- 1) 개정 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갖는 무인정보단말기설치·운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정
- 2) 보조인력배치,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 규정

나.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미조치에 대한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의 기간, 절차, 방법 규정 (안 제34조의 6)

다.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및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(안 제56조, 별표 5)

라. 법률로 상향 규정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, 방법, 절차 등 규정 등 (안 제34조의 7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규제심사 전

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”을 “법 제4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5부터 제3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5(무인정보단말기 설치·운영자의 단계적 범위 및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) ①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.

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·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.

1.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
2.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
3.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
4.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(단, 장애인·고령자

등이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5.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여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(단,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제34조의6(시정명령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·운영자에게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
2. 시정명령의 내용
3. 시정기한
4.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

④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·운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4조의7(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) ①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법·제도 현황
3.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, 정기조사는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,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5조를 삭제한다.

제56조 중 “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”를 “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나목에 따라 가중된 기준으로 처분하는 경우,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의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표 3의2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5를 별지2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별지 1 [별표 3의2]

무인정보단말기 설치·운영자의 단계적 범위(제34조의5제1항 관련)

1. 다음 각 목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·운영자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27일부터 적용

가. 공공기관

나. 교육기관

다. 의료기관 등

라.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

마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

바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등

사. 복지시설 등

아. 다음의 문화·예술사업 시설

1)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·일반공연장(민간시설만 해당한다),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, 조각공원, 문화의 집, 문화체육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지방문화원

2)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 박물관(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)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학 박물관(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·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립 미술관(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) 및 대학 미술관(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·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

자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

차. 그 밖의 재화·용역 등이 제공되는 사업장

2. 다음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·운영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

가.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

별지 2 [별표 5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
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
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70조제1항	900	1,500	2,400
나.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	350	350	350
다.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관리·활용한 경우	법 제70조제3항제1호	200	300	400
라.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	법 제70조제3항제2호	200	300	4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4조(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지능 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	제34조(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지능 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			
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“웹사이 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 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유 · 무선 정보통신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유 · 무선 정 보통신을 말한다.	<삭 제>			
1. 웹사이트				
2.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 는 응용 소프트웨어				
3.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, 정보 제공, 상품 주문 ·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 말기				
4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 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				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유 · 무선 정보통	② ----- 법 제46조제1항 -----			

신에 대한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34조의5(무인정보단말기 설치

· 운영자의 단계적 범위 및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) ①
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.

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·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.

1.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

2.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

3.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

<신 설>

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
단말기 설치

4.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
소프트웨어 제공(단, 장애인·
고령자 등이 장애인·고령자
등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
말기를 동등하게 접근·이용
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 한
정한다)

5.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
하여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
을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
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
응용 소프트웨어 제공(단, 장
애인·고령자 등이 장애인·
고령자 등이 아닌 사람과 무
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
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
경우로 한정한다)

제34조의6(시정명령) ① 과학기술
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의
2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
를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해 1
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
명령을 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
<신 설>

무인정보단말기 설치·운영자에게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
2. 시정명령의 내용
3. 시정기한
4.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

④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·운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4조의7(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) ①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법·제도 현황

제35조(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) 법 제47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·무선 정보통신”이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·무선 정보통신

3.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, 정기조사는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,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<삭 제>

<u>을 말한다.</u> 제5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 70조제1항 및 제2항에</u>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 다.	제5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 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</u> <u>정</u> ----- --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	
연 락 처	(044) 202 - 6155